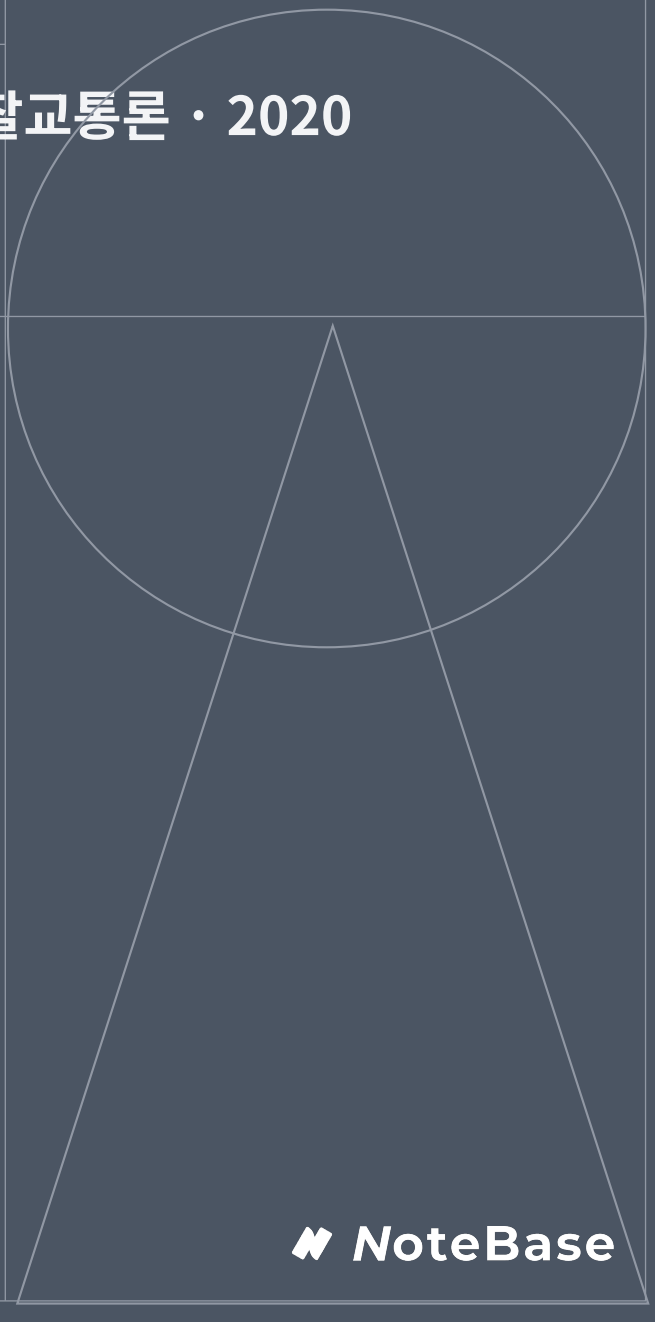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0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0

문 1. 다음 보행자시설과 관련하여 용어 및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① 보행교통류율: 보행교통량을 단위시간(1분) 동안 단위길이(1m)를 통과한 보행자수로 환산한 것으로 단위는 인/분/m이다.

② 보행점유공간: 보행자 1인이 이용 가능한 공간의 밀도 크기를 의미하며 단위는 인/m^2이다.

③ 유효보도폭: 실제 보도폭에서 보도상에 설치되어 보행에 지장을 주는 방해폭원을 제외한 폭원으로서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소폭원을 의미한다.

④ 보행자 평균지체: 보행자가 차로를 횡단하기 위해 신호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의해 겪게 되는 평균지체를 의미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보행점유공간은 **1인당 면적(m^2/인)**이고, 보행밀도는 **단위면적당 인원(인/m^2)**이다. ②는 두 개념과 단위를 뒤바꾸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보행교통류율은 **단위시간·단위 보도폭당 통과 인원**이다. 따라서 1분 동안 폭 1m당 몇 명이 지나가는지를 나타내며 단위는 인/분/m이다. 여기서 단위길이는 보행방향의 이동거리가 아니라 통과 단면의 폭을 뜻한다.

② (X) 보행점유공간은 **보행자 1인당 이용 가능한 면적**이므로 단위는 **m^2/인**이다. 선지의 인/m^2는 단위면적당 보행자 수인 보행밀도의 단위이다. 같은 공간에서 두 지표는 서로 역수 관계이다.

③ (O) 유효보도폭은 전체 보도폭에서 시설물 등으로 통행이 곤란한 폭을 제외한 **실제로 이용 가능한 폭**이다. 장애물로 좁아진 구간의 통행 가능 폭을 반영해야 보행시설의 처리능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

④ (O) 신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평균지체는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신호 때문에 추가로 기다리는 시간**의 평균을 뜻한다. 횡단보도를 실제로 걷는 데 걸리는 횡단시간과 구별한다.

NoteBase

문 2. 도로안전시설 가운데 통행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설치하는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종단길이 (㉠), 높이 (㉡)를 기준으로 하고, 단, 폭원 6m 미만 도로에서는 종단길이 (㉢), 높이 (㉣)로 한다. () 안에 들어갈 설치규격으로 맞는 것은?

① ㉠ 3.6 m ㉡ 10 cm ㉢ 3.0 m ㉣ 10 cm

② ㉠ 3.0 m ㉡ 7.5 cm ㉢ 2.5 m ㉣ 7.5 cm

③ ㉠ 3.6 m ㉡ 10 cm ㉢ 2.0 m ㉣ 7.5 cm

④ ㉠ 3.0 m ㉡ 7.5 cm ㉢ 2.0 m ㉣ 5.0 cm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표준 규격 **3.6m·10cm**와 좁은 도로에서 여건에 따라 적용하는 규격 **2.0m·7.5cm**를 구분한다. 네 빈칸은 이 순서로 연결된다.

빈칸별 해설

㉠ **표준 종단길이 → 3.6m:** 원호형 과속방지턱의 표준 길이는 차량 진행 방향으로 3.6m이다. 도로의 전체 폭이나 차로 폭과 구별한다.

㉡ **표준 높이 → 10cm:** 표준 길이 3.6m와 짝을 이루는 높이는 10cm이다. 길이는 m, 높이는 cm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단위도 함께 확인한다.

㉢ **좁은 도로에 적용하는 종단길이 → 2.0m:** 문제의 폭원 6m 미만 도로에 대응시키는 소형 규격은 길이 2.0m이다. 실제 지침에서는 국지도로의 소로 등에서 표준규격이 현장 여건상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명한다. 폭이 6m 미만이면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소형 규격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 **소형 규격의 높이 → 7.5cm:** 길이 2.0m와 짝을 이루는 높이는 7.5cm이다.

따라서 ㉠~㉣은 **3.6m, 10cm, 2.0m, 7.5cm**로 연결되어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 교통경찰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주차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안전시설을 관리·운영한다.

정답 4번

①

경찰공무원은 보행자·차마·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되면 혼잡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②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 통행·횡단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안전한 통행·횡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⑤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NoteBase

③

경찰공무원은 위법하게 주차한 차가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 ·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④

시선유도표지·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로관리청이 유지·관리**한다.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 · 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 · 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NoteBase

문 4. 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조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통사고 물적·정신적 피해액

②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③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④ 음주·약물을 투여한 상태 운전여부

정답 1번

①

조사 대상은 **교통사고 피해 상황**이다.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까지를 법정 조사항목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0.12.31>
2. 교통사고 피해 상황

②

교통사고 조사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0.12.31>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NoteBase

③

교통사고 관련자와 함께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0.12.31>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④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조사해야 할 사항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0.12.31>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NoteBase

문 5.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규제·지시·보조 등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안내 등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③ 보조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④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정답 2번

①

주의표지는 **도로상태의 위험이나 도로·부근의 위험물을 미리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는 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규제표지는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 내용을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선지의 주의·안내에 관한 설명과 다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③

보조표지는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4. 보조표지 주의표지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NoteBase

④

지시표지는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교통안전에 필요한 지시를 알리고 도로사용자가 따르도록 하는 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 ·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NoteBase

문 6.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조사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②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③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요인 및 처리결과 조사
④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정답 3번

①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과 주차 수요**를 조사해야 한다.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2.4.20>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②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2.4.20>
2.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의 신호기 ·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NoteBase

③

보호구역 지정 시 조사하도록 정한 사항은 주변 도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이다. 교통사고 발생 요인 및 처리결과가 아니다.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2.4.20>
3.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④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을 조사해야 한다.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2.4.20>
4.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NoteBase

문 7.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운전 행동기준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과속 유형은 과속 및 장기과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제한 속도보다 20km/h 이상으로 주행시 과속, 이를 10분 이상 운행할 경우 장기과속으로 판단한다.

② 급회전 유형(누적회전각)은 급격한 좌·우회전(60~120도 범위) 및 급U턴(누적회전각 160~180도 범위)이 감지될 경우 위험운전으로 판단한다.

③ 급차로변경 유형(초당 회전각)은 급진로 변경 및 급앞지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30km/h 이상으로 차종별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초당 회전각이 변경될시 위험운전으로 판단한다.

④ 연속운전은 운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며, 15분 이하 휴식을 취했을 때 적용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운행기록 분석에서 위험운전 유형을 구분하는 지표와 장기과속의 지속시간 기준을 묻는다.

핵심 개념

위험운전 행동기준은 차량의 속도, 진행방향 변화, 운행시간 등의 기록으로 사고 위험이 큰 운전행동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과속은 제한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 장기과속은 과속의 지속시간으로 판단한다. 급회전은 누적회전각, 급차로변경은 초당 회전각의 변화로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장기과속을 판단하는 '10분 이상'이다. 장기과속은 과속 상태가 3분 이상 지속될 때 판단하므로, '10분 이상'을 '3분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 과속과 장기과속을 구분하는 추가 조건은 지속시간이다.
② O: 급회전 유형은 차량의 진행방향이 누적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본다. 좌·우회전의 누적회전각은 60° ~ 120°, 급U턴은 160° ~ 180° 범위로 구분되므로 선지의 설명이 맞다.
③ O: 급차로변경 유형에는 급진로 변경과 급앞지르기가 포함된다. 30km/h 이상으로 주행하면서 초당 회전각의 변화가 차종별 기준을 넘는지를 판단한다. 누적회전각을 보는 급회전 유형과 판단 지표가 다르다.
④ O: 연속운전은 충분한 휴식 없이 운행을 이어가는지를 판단하는 항목이다. 운행시간 4시간 이상과 휴식시간 15분 이하라는 두 조건을 함께 적용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과속과 장기과속이라는 유형명을 맞게 제시하면서 지속시간만 10분으로 바꾸었다. ②의 누적회전각과 ③의 초당 회전각을 같은 지표로 혼동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형별로 속도 차이, 지속시간, 누적회전각, 초당 회전각 중 무엇을 판단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이어 숫자와 이상·이하 조건을 확인한다. 연속운전은 운행시간과 휴식시간을 함께 살핀다.

암기 포인트

장기과속은 3분, 급회전은 누적각, 급차로변경은 초당각, 연속운전은 운행 4시간 이상과 휴식 15분 이하이다.

NoteBase

문 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최근 신설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서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 5년 ㉡ 20년 ㉢ 5천만원
② ㉠ 5년 ㉡ 15년 ㉢ 5천만원
③ ㉠ 3년 ㉡ 15년 ㉢ 3천만원
④ ㉠ 3년 ㉡ 10년 ㉢ 3천만원

정답 3번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teBase

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teBase

문 9.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과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② 장애인, 노인 및 외국인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 법령과 지식
③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정답 2번

①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에는 **운전자의 기본예절과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18.3.27>
1.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6.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②

교육내용은 **도로교통에 관한 일반적인 법령과 지식** 및 **어린이·장애인·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이다.
장애인·노인·외국인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법령과 지식으로 한정한 항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18.3.27>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4. 어린이 · 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NoteBase

③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에는 **안전운전 능력과 교통사고의 예방·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18.3.27>
3. 안전운전 능력
3의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에는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18.3.27>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NoteBase

문 10.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교통안전교육 중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②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정답 3번

NoteBase

①

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다. 다만 **적성검사 미수검·불합격 또는 자진 반납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된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8.11, 2017.10.24, 2020.10.20>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① 시 ·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5.8.11, 2016.1.27, 2017.7.26, 2018.3.27, 2018.12.24, 2020.6.9, 2020.12.22, 2021.1.12, 2023.10.24, 2024.2.13, 2024.3.19, 2024.12.3, 2025.4.1>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 · 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NoteBase

③

취소처분이나 법정 사유에 따른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다. 선지의 3개월은 법정 기간과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8.11, 2017.10.24, 2020.10.20>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제93조제1항제1호 · 제5호 · 제5호의2 · 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8.11, 2017.10.24, 2020.10.20>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NoteBase

문 11. 교통사고 조사 시 교통사고 처리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사고는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정한다.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발생한 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③ 차에 의한 사고발생시 차체에 의한 것 이외의 차량에 적재된 화물 등 차량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에 의해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교통사고 조사시 운전자의 과실을 명백히 가리고 피해발생 여부 및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범한 범행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정답 2번

NoteBase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도로 밖에서 발생한 차의 교통사고에도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도 도로 외의 곳에 적용**되므로, 두 법률의 사고를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 · 제44조 · 제45조 · 제54조제1항 · 제148조 · 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1조)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

NoteBase

②

차의 범위는 **도로교통법상 차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이다.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와 사람·가축의 힘 또는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포함하되, 철길을 이용하는 것·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 등 법정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 장치는 제외한다.

NoteBase

③

차의 교통에는 **운전행위와 그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동일하게 평가되는 행위**가 포함된다. 운전·이동·정차 과정에서 적재화물 등이 떨어져 피해를 일으킨 사고도 포함되므로, **차체가 직접 충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

3. 제1심 및 원심의 각 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트럭의 운전자인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례법의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가.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작업팀장으로서 오리의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면서, ○○오리농장 내 공터에서 피해자가 사육한 오리를 피고인 2가 운전한 트럭 적재함의 오리케이지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트럭이 경사진 곳에 정차하였음에도 트럭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거나 오리케이지를 고정하는 줄이 풀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④

교통사고처리의 특례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으킨 사고**에 적용한다. 차를 범행 도구로 이용한 **고의범죄는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고의범죄로 처리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NoteBase

문 12. 교통사고 현장의 측점 및 위치측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상자의 위치는 허리를 중심으로 1점을 측점한다.
㉡ 도로상 가로수 및 수목 등에 생긴 자국은 1점을 측점한다.
㉢ 길게 비벼지거나 파손된 가드레일은 2점을 측점한다.
㉣ 직선으로 길게 나타나다가 마지막 부분이 휘어지거나 변형이 있는 타이어 자국은 2점을 측점한다.
㉤ 위치측정법은 비고정 기준점을 이용하는 삼각법과 고정 기준법을 이용하는 좌표법 2가지가 있다.
㉥ 1개의 측점은 2개의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가 측정되어 표시되면 사고결과를 도면에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 기준점 및 기준선으로부터 조사분석에 필요한 측점까지의 위치측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삼각측정을 필요로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꺾이거나 휘어진 흔적은 형태 변화 지점까지 측정해야 하며, 삼각법도 고정된 기준점을 이용한다. 위치측정에는 좌표법도 있으므로 삼각측정이 항상 필수인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O: 사상자의 대표 위치를 도면에 표시할 때는 **몸의 중심인 허리 부근의 1점**을 측점으로 삼는다. 이는 위치 표시를 위한 기준이며, 머리와 발의 방향이나 자세까지 1점만으로 모두 표현한다는 뜻은 아니다.

㉡ O: 가로수·수목에 생긴 국소적인 충돌 자국은 **자국의 위치를 대표하는 1점**을 측점으로 정한다. 자국의 높이·크기·형태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기록한다.

㉢ O: 길게 이어진 가드레일의 마찰·파손 구간은 **시작점과 끝점의 2점**으로 그 위치와 범위를 표시한다. 복잡한 변형의 상세 형상까지 언제나 두 점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 X: 끝부분이 휘거나 변형된 타이어 자국은 시작점과 끝점만으로 형태를 나타낼 수 없다. **시작점·방향이나 형태가 바뀌는 지점·끝점**을 포함하도록 측점을 추가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2점이라고 한 설명이 잘못이다. 곡선 형상이 복잡하면 더 많은 점을 측정한다.

㉤ X: 삼각법은 움직이는 비고정 기준점에 의존하는 방법이 아니다. **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두 고정 기준점**에서 측점까지의 거리를 각각 측정한다. 좌표법은 기준선에 따른 거리와 그 선에서 측점까지의 수직거리 등을 이용한다.

㉥ O: 두 기준점 사이의 위치관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각 기준점에서 측점까지 잰 두 거리로 **삼각형을 구성하여 위치를 도면에 옮길 수 있다**. 이때 현장 약도 등에 기준선의 어느 쪽에 있는지도 표시하여 대칭 위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X: 위치측정에 반드시 삼각법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도로와 현장 조건에 따라 **기준선과 수직거리를 이용하는 좌표법**도 사용할 수 있다.

잘못된 보기는 ㉣·㉤·㉦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NoteBase

문 13.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현장조치 과정에서 구득된 자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돌 스크럽(Collision Scrub): 차량이 심하게 충돌할 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순간적으로 강한 마찰력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최대접촉 시 바퀴의 위치를 나타낸다.

② 요마크(Yaw Mark): 자동차가 심하게 코너링할 때 전륜과 후륜 사이에 내륜의 차이가 생기고, 이 때 바깥쪽 바퀴가 원심력에 의해 노면과 마찰할 때 생기는 자국이다.

③ 가속 스카프(Acceleration Scuff): 충분한 동력이 구르는 바퀴에 전달되어 도로표면에 적어도 한 번의 스핀이나 슬립이 발생되어 나타나는 흔적이다.

④ 구른 흔적(Imprint): 큰 압력없이 미끄러진 금속물체에 의해 단단한 포장노면에 불규칙적으로 가볍고 좁게 긁힌 자국으로, 차량의 전복위치 및 충돌 진행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흔적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타이어가 구르며 찍어 남기는 **구른 흔적**과 금속부위가 노면을 스치며 남기는 **긁힌 흔적**을 구별해야 한다. 작은 압력으로 생긴 가늘고 얕은 금속 마찰 자국은 긁힌 흔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충돌 스크럽은 충돌 충격으로 타이어가 노면에 강하게 눌리거나 문질러지며 남는 흔적이다. **최대접촉 무렵의 바퀴 위치**를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 다만 바퀴 자국의 위치를 차체가 처음 접촉한 위치와 곧바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② O: 급격한 선회 중 타이어가 구르면서 옆으로 미끄러지면 곡선 형태의 **요마크**가 남는다. 선지는 선회궤적의 차이와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단순히 앞뒤 바퀴의 경로가 다르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횡방향 미끄러짐**이 핵심이다.

③ O: 구동력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서 전달할 수 있는 마찰력의 한계를 넘으면 바퀴가 헛돌거나 미끄러지며 **가속 스카프**가 생긴다. 급출발·급가속에 따른 구동바퀴의 흔적으로, 제동으로 바퀴가 잠겨 생기는 자국과 구별한다.

④ X: 금속부위가 작은 압력으로 포장노면을 스치거나 끌리며 남긴 가늘고 얕은 자국은 **긁힌 흔적(Scratch)**이다. **구른 흔적(Imprint)**은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면서 노면에 접지면 무늬 등을 찍어 남긴 자국이므로, 금속에 의한 긁힘과 다르다.

NoteBase

문 14.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답 4번

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teBase

③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도주 후 사망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선지의 1년 이상은 잘못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teBase

문 15.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통사고 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1번

①

아내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아내가 신고·조사 등 사후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더라도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과 제1심이 증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차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치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와 피고인의 차 사이에 끼어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하였으나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경찰에 전화로 신고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는 경찰관의 안내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②

교통사고 후 도주행위에만 가담한 동승자는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까지 부담하지 않는다.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919 판결)

NoteBase

③

병원에 데려다준 것만으로 사고 운전자의 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나 병원 관계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떠나 **사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면 도주에 해당한다**.

기록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태는 2주 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염좌상 정도로 그 후 병원측의 안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NoteBase

문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처벌의 특례 12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신호 및 안전표지(지시)를 위반한 경우
㉡ 도시부 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

신호위반과 안전표지의 지시위반은 12개 처벌특례 예외사유에 포함된다. 안전표지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그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NoteBase

ㄴ

횡단·유턴·후진에 관한 예외사유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금지 위반**이다. 도시부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teBase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개 처벌특례 예외사유에 포함된다. 그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치상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12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NoteBase

ⓞ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안전거리 미확보 자체는 12개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NoteBase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치상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12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은 12개 처벌특례 예외사유에 포함된다. 그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NoteBase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자체는 12개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호위반 등 별도로 열거된 행위가 있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NoteBase

문 17. 교통위반으로 인해 범칙행위가 성립된 경우 다음의 빈 칸에 들어갈 범칙금액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범칙행위	차량종류	범칙금액(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30,000 120,000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위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 60,000 40,000 30,000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70,000 () 40,000 ()

① 90,000원 / 80,000원 / 50,000원 / 20,000원

② 80,000원 / 80,000원 / 50,000원 / 30,000원

③ 90,000원 / 70,000원 / 60,000원 / 20,000원

④ 80,000원 / 70,000원 / 60,000원 / 30,000원

정답 4번

NoteBase

공통 해설

범칙행위로 처리되는 시속 60km 초과 속도위반의 경우 **이륜자동차등의 범칙금은 8만원**이다.

https://drive.google.com/file/d/1pCzrafMDaye8CEblhoVPs6Pzm8wFMjIi/view?usp=drivesdk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의 범칙금액은 **승합자동차등의 경우 70,000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https://drive.google.com/file/d/1VmueI88OxUKHQrmaTWGTGgHPh1-S1SO8/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bS8gYc4MKf3-95xtjYUSJi1qI917ZQHh/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JNtpkRuJiFIOFQjxrPjUmQppEJcZk6op/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y1WREvKEgKzTeAN4wAFC9mH9GwF79Vgo/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71wIej9SYK9xD46Vs704lFq9V9Oso8t0/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Mh88Cjs2KTqukrqhhMpKYAa7PdEPusne/view?usp=drivesdk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범칙행위가 성립하면 **승용자동차등의 범칙금은 6만원**이다.

https://drive.google.com/file/d/1kRBqheSd43CJmf0j_1WrkMyZSkCbtkL-/view?usp=drivesdk

제시된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과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에 연결된 공통 범칙금액란에서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의 금액은 30,000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https://drive.google.com/file/d/1VmueI88OxUKHQrmaTWGTGgHPh1-S1SO8/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bS8gYc4MKf3-95xtjYUSJi1qI917ZQHh/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JNtpkRuJiFIOFQjxrPjUmQppEJcZk6op/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y1WREvKEgKzTeAN4wAFC9mH9GwF79Vgo/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71wIej9SYK9xD46Vs704lFq9V9Oso8t0/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Mh88Cjs2KTqukrqhhMpKYAa7PdEPusne/view?usp=drivesdk

NoteBase

문 18. 「도로교통법」상 행정형벌 중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이다.

④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정답 2번

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서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지점·대리점·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선지의 10일은 잘못이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NoteBase

③

성명이나 주소가 불확실한 사람,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은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 · 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20.10.20>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최초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NoteBase

문 19. 효과적 교통정리 실시를 위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통평등의 원칙

② 교통군 단순화의 원칙

③ 기본교통권의 원칙

④ 도로능률 증진의 원칙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교통정리의 네 원칙에 포함되는 것은 **우선교통권**이지 기본교통권이 아니다. 교통평등·교통군 단순화·도로능률 증진과 함께 이 명칭을 구별해야 한다.

개념 구분

교통정리의 대표적인 네 원칙은 **교통평등, 교통군 단순화, 도로능률 증진, 우선교통권**이다. 제시된 선택지 중 '기본교통권'은 이 네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평등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교통참가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교통군 단순화는 진행방향이나 교통수단의 특성이 다른 흐름을 정돈하여 상충과 혼란을 줄이는 것이다.

도로능률 증진은 도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

혼동하기 쉬운 명칭은 **우선교통권**이다. 이는 교통정리에서 우선하여 통행시켜야 할 대상을 고려하는 원칙으로, 모든 사람의 이동 기회와 접근성을 논하는 기본교통권이라는 개념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20. 교통경찰활동 중 교통순찰의 경우 순찰목적과 순찰방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중단속을 목적으로 다른 순찰대·기동대를 지원하고 은폐·정지 관찰을 수행한다.

②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야 장애물 등 도로상황 관찰을 수행한다.

③ 위반행위의 예방 및 위반자의 색출/단속 등을 수행한다.

④ 외근경찰은 수배차량 및 차량이용 범죄자 등 검거의 임무를 수행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교통순찰의 예방·관찰·단속 목적과 그 목적에 맞는 순찰방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통순찰은 도로를 순찰하며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단속하는 활동이다. 경찰의 존재를 운전자에게 드러내는 가시적 순찰은 위반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은폐 관찰은 경찰의 존재를 숨겨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둔 방법이므로, 일반적인 교통순찰의 예방 중심 설명과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집중단속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은폐·정지 관찰”을 일반적인 교통순찰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통순찰은 적발만을 위해 숨는 방식보다 경찰의 존재를 드러내어 위반을 예방하고 도로상황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폐 관찰”은 “가시적 순찰을 통한 예방·관찰”로 고친다. 정지하여 관찰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적절한 것은 아니며, 핵심은 은폐를 예방 중심 순찰의 일반적 방법으로 묶은 데 있다.
② O. 시야 장애물은 운전자의 위험 발견을 늦추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도로상황을 관찰하는 것은 교통순찰의 안전 확보 목적에 부합한다.
③ O. 교통순찰에는 경찰의 존재를 통한 위반 예방과 실제 위반자의 발견·단속이 함께 포함된다. 예방과 단속은 서로 배제되는 목적이 아니다.
④ O. 교통순찰 중 차량을 관찰하면 수배차량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범죄자를 발견할 수 있다. 외근경찰이 이들을 발견·검거하는 것도 순찰 임무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집중단속”이 ③의 “단속”과 비슷해 보여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단속이 순찰 임무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은폐 관찰을 일반적인 순찰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④도 교통법규 위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적과 방법을 나누어 판단한다. 도로 위험요인 관찰, 위반 예방·단속, 수배차량·차량이용 범죄자 검거는 순찰 임무에 포함된다. 방법을 묻는 선지에서는 경찰의 존재를 드러내는 예방 효과와 은폐 적발의 차이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교통순찰은 위험 관찰·위반 예방과 단속·수배차량 검거를 함께 수행하며, 가시적 활동은 예방 효과를 높인다.

NoteBase